복지후생지침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

2015.5.26.

케이티 노동조합

위원장 정 윤 모 (인)

[복지후생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비 고
부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선택적복지제도, 제22조 자기계발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0.00 /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 6월 1일 이전 발생한 순직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은 종전 지침을 따른다.	제2조(적용례) 2014년 6월 1일 이전 발생한 순직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기준은 지침 제205호 복지후생지침(2012.4.10. 개정)에 따른다. 2014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순직자의 경우 지침 제240호 복지후생지침(2014.12.31. 개정)에 따른다.	적용지침 명확화